

< 2015년 개정판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목 차

1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 개념	1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3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1. 규모기준	11
① 업종별 규모기준	12
② 상한기준	15
2. 독립성 기준	19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20
②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21
③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	27
①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파악	28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36

3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1.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53
2.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58

4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및 중소기업 확인방법

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66
2.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68

◎ 참고자료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79
◆ 중소기업기본법	8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1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113

사례(FAQ)별 찾기

중소기업이란?

[번호]	[쪽수]
1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7
2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7
3 단위농협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7
4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5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6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8
7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하나요?	9
8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요?	9
9 법인의 여러 사업장은 중소기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나요?	9
10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10

중소기업 범위기준

[번호]	[쪽수]
11 중소기업에 적용 안되는 업종이 있나요?	47
12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47
13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은?	47
1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48
15 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48
16 결산일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는 경우 평균매출액 산정은?	48
17 50:50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최다출자자는?	49
18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49
19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판단기준은?	49

[번호]		[쪽수]
20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주식회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50
21	기업과 기업 간에 주식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사례	51
22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주식등을 소유할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 사례	52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번호]		[쪽수]
23	2015년 시행되는 매출액 단일기준은 모든 기업이 1월 1일부터 적용하나요?	64
24	2015년 개정법령 시행 후 유예중인 기업의 적용방법은?	64
25	기존에 유예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은?	64
26	창업 당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은?	65
2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합병 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65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및 확인방법

[번호]		[쪽수]
28	외국인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요?	74
29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요?	74
30	여러 개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74
31	해외 출장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도 상시근로자인가요?	75
32	중도 퇴사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는?	75
3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기에 한 번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76
34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란?	76
35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77
36	판로지원법에 따른 간주 중소기업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77

중소기업 기준(요약)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번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제조업 (12개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운수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운수업	H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2015년 달라진 점

-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 ② 업종구분 :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 ③ 상한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 억원 기준 폐지 (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 ④ 유예제도 : 창업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 ⑤ 관계기업 판단기준 :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장.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 이하 중소기업 범위기준 참조)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7.7%가 일하고 있습니다.

Tip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의 16%, 코스닥 상장회사의 60%, 코넥스 상장회사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추정됩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Tip

1.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는 「산업발전법」에서 2011년 7월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1.21, 시행 2014.7.22)으로 기준 재정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ahpe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50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안내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을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알아보기

지원시책 안내책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메인화면 우측 → 주요서비스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자’ 파일 다운로드

* 매년 중소기업청과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주제·분야·기관별로 수록

지원시책별 실시간 정보조회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검색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50여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시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 링크기능 등 제공

Tip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Tip

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반대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배당)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염업조합은 이익 배당이 가능하지만 비영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 전통시장 상인, 사설학원, 개인병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영리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한국전력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2014년 1월 14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단지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
- 타 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적용 사례

적용 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작용 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작용 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작용 5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작용 6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개별법(「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또는 정관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2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3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4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되는데,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분류번호 K)’, 비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번호 M)’으로 분류됩니다.

사례5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6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7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8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헤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9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10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 용 업 종	• 모든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만 해당
주 업종 기 준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기 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상 한 기 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 원, 자기자본 1천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독립성 기 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유 예 기 간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 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은 허용)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 2014.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따라 조특법 상 중소기업기준 개정예정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된 업종별기준 준용, 상한기준 중 상시근로자수·자기자본 폐지)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매출액 등 외형에 따른 규모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

-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Tip

- 종전에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투입 지표는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매출액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의 택일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3년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등 네 가지 상한기준을 적용했으나, 매출액 단일기준 도입과 더불어 그 의미가 퇴색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을 제외한 상한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한편, 종전에는 별도로 규모기준을 정했던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 영리기업과 똑같이 규모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업종별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아래 [별표1]의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번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상기 별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모기향을 만드는 기업의 주업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기향'으로 검색하면, 분류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분류번호 20411)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분류번호 중 앞에 두 자리(20)가 중분류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써, 제조업 코드 'C'를 앞에 붙여 분류번호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 해당기업의 주업종이 됩니다.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를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Tip

1.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별표1]을 적용할 때는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2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은 해당 기업의 주업종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규모기준이 낮게 설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관계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주업종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주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 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매출액등의 산출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 · 합병일 ·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Tip

1.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2. 2015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상한기준 중에 하나인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에서의 3년 평균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며, 개정 법령에서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의 계산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산출방법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한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자산총액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생략)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 3. (생략)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적용 사례

적용 1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 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 음료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제조업(분류기호 'C11')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 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2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4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15년 5월 15일에 평균매출액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15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14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적용 3 인력 파견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5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인력 파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800억 원, 1,000억 원, 1,1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도 충족하므로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5 2013년 5월에 대기업으로부터 분할한 S/W 개발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연도별 매출액이 2013년도 400억 원, 2014년 850억 원인 경우 2015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 S/W 개발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4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85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돋기 위해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2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은 주식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Tip

관계기업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인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리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독립성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2014년 10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63개이며, 총 계열회사 수는 1,695개입니다.

Tip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과거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변동사항은 매월 1일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이에 벼금가는 매우 큰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960여개로 추정(2013년 기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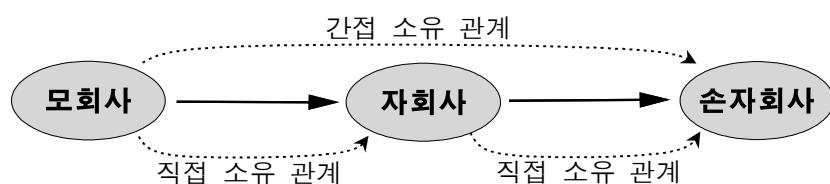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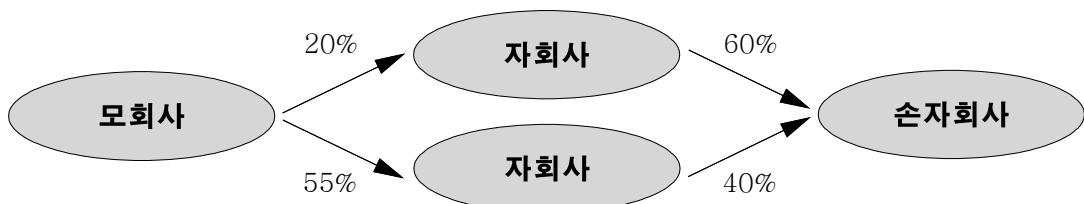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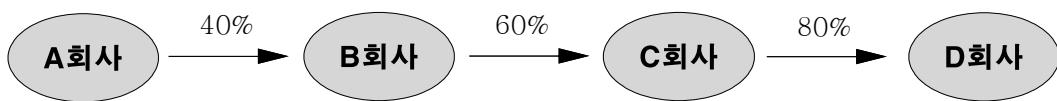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사례 3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Rightarrow 간접소유비율 : $(20\% \times 60\%) + (55\% \times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times 80\% = 19.2\%$

- 동 규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국내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모법인'의 적용대상은 도입 당시 상장법인에 국한했으나, 2005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법인과 외국법인도 포함하였으며, 2014년 4월 14일 시행령 개정으로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2015년 1일 1일 시행)
 - 기존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환율 또는 직전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 낮은 것을 적용했으나, 외환위기와 같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생략)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2조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적용 사례

적용 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20명,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입니다. 2014년 7월 8일에 자산총액 6천억 원인 기업이 6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2014년 7월 8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2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3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 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 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4 A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70%를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 종전에는 동 규정을 주식회사에만 적용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동 관계가 성립한 기업이라면 부칙<23412호, 2011.12.28.>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5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중소기업인가요?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를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1년 9개월가량의 시행유예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 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에 주식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가?



주식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가?

①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Tip

1.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거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또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현행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 관련 개정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개정 법안이 공포될 경우 유한회사도 지배기업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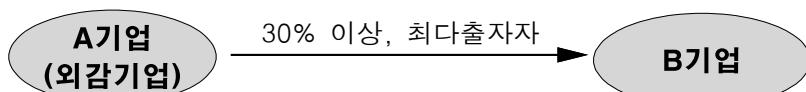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이 책에서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3.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는 삭제되었으며, 지배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

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 다만, 2015년부터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분할이 아닌 단순지분변동은 기존과 같이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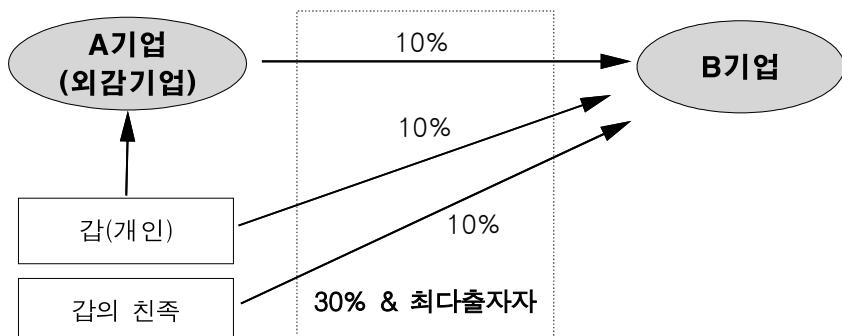
사례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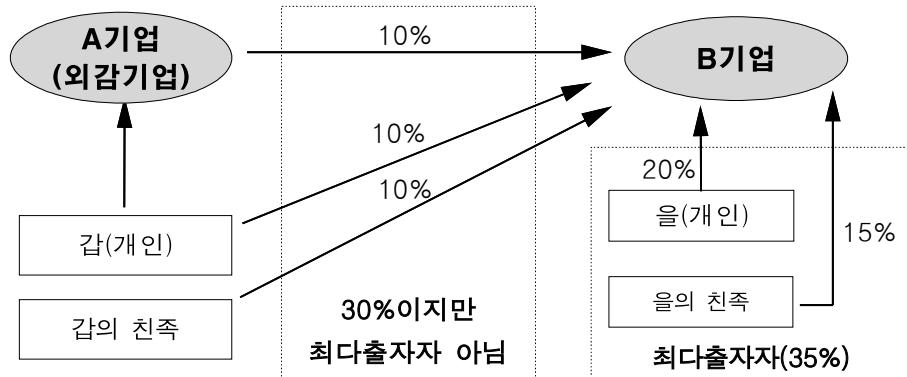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3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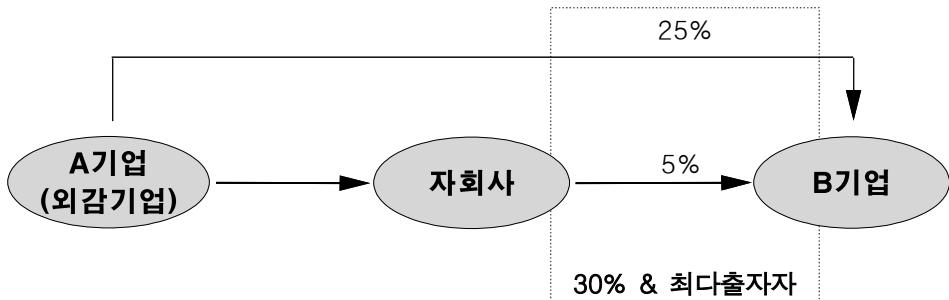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Tip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최다출자자 결정 시, 지배기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판단. 또한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

유형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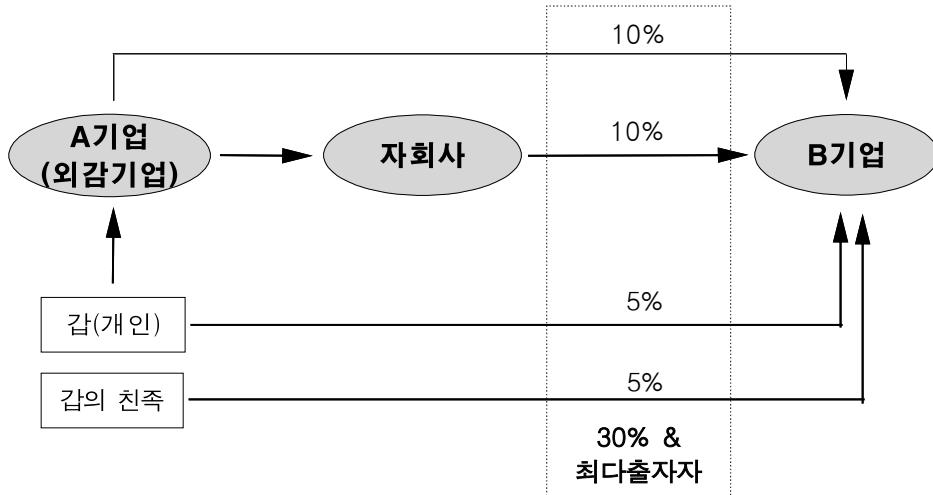
사례 1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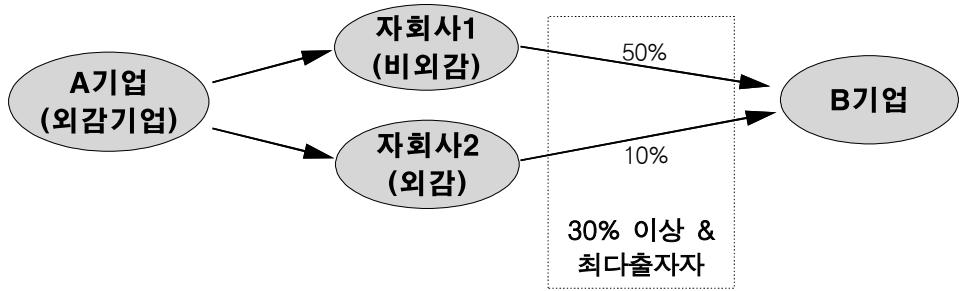
사례 2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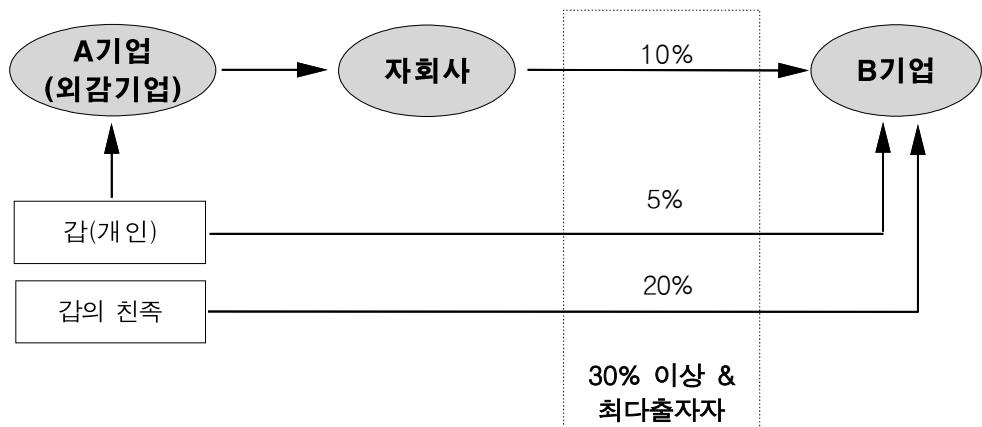
사례



A기업이 B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1,2 및 B기업),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 * '자회사1'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지만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자회사1과 B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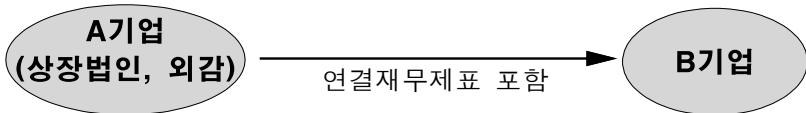
유형 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위의 5가지 유형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접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

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이 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 관계기업 간에 평균매출액등을 주식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Tip

1. 과거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4.1.1일부터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했으며, 2015.1.1일부터는 모든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제9조제4호 관련)
2. 2015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간의 규모합산 시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적용했으나, 2015.1.1일부터는 업종별 규모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평균매출액만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등 합산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이 때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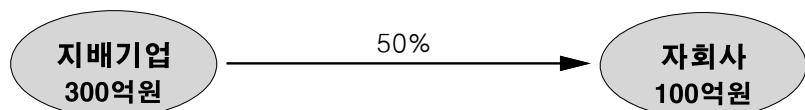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Tip

시행령 [별표2]에서는 모든 종속기업을 '자회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자회사'의 개념과는 다른 점에 유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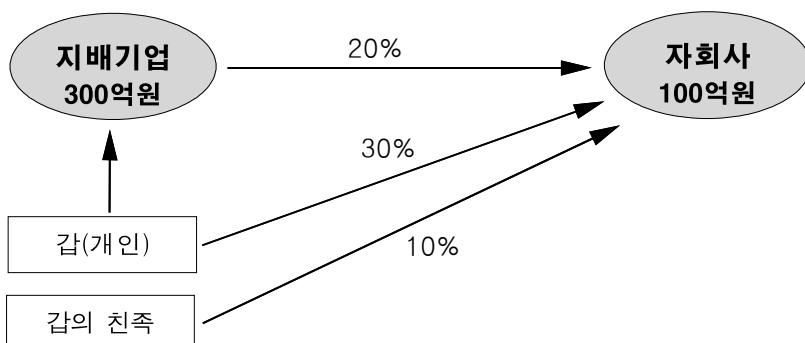
- 그럼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을 지배유형별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등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14쪽 '평균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참고)

유형 1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 = 400억원
-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4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20%) = 320억원
 -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0%) = 160억원
-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소유비율만으로 산정

유형 3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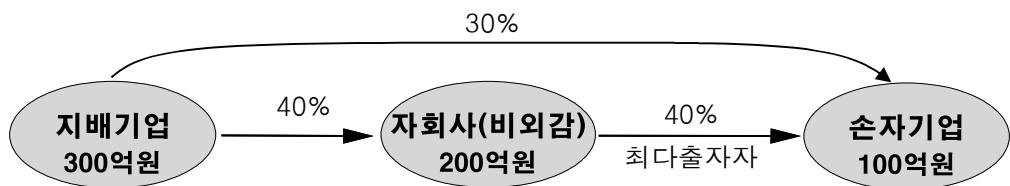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540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 \times 40\% = 40\%$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 5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지배기업(300억원×40%) = 300억원
-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

유형 4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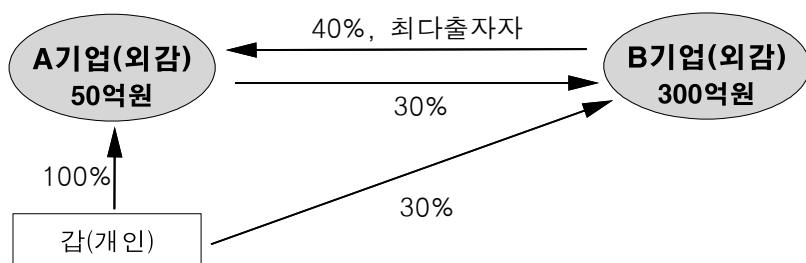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24%) = 404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모회사(300억원×40%) = 32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4%) = 172억원

유형 5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46%) = 426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0%) = 32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6%) = 238억원

유형 6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A기업 : A기업(50억원) + B기업(300억원×40%) = 170억원
- B기업 : B기업(300억원) + A기업(50억원×40%) = 320억원

Tip

상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 나.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적용 사례

적용 1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A기업은 450억 원, B기업은 5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하여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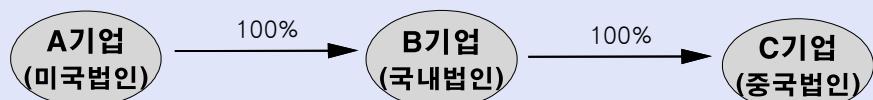
적용 2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주식회사에 한정)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중)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적용 3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 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4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5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2012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지배기업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적용 6 A기업(지배기업, 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종속기업, 3월 결산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2015년 2월 15일에 주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관계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당해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반영됩니다.

Ti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이므로, 위 적용사례에서 실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2016년 4월 1일입니다. (53쪽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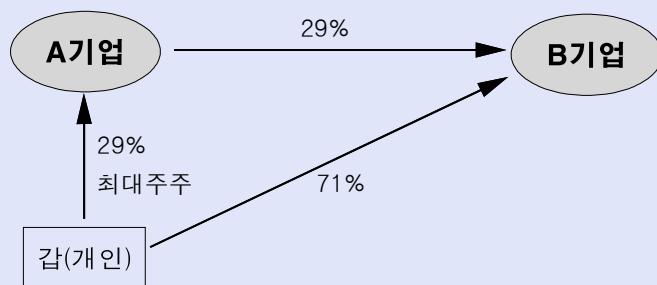
적용 7

3년 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실질적 소유(50% 이상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00% 합산하므로 B기업은 당연히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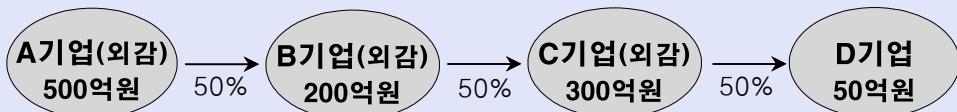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개인(갑)은 A기업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9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 ☞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A(500억원) + B(200억원) + C(300억원×50%) = 850억원
 - B기업 : B(200억원) + A(500억원) + C(300억원) + D(50억원×50%) = 1,025억원
 - C기업 : C(300억원) + A(500억원×50%) + B(200억원)+ D(50억원) = 800억원
 - D기업 : D(50억원) + B(200억원×50%) + C(300억원) = 450억원

적용 10

A기업(6월결산)이 B기업('14.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14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15년 4월 1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1.7.1~2014.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14.4.1~'15.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적용 11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 하여 신설 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 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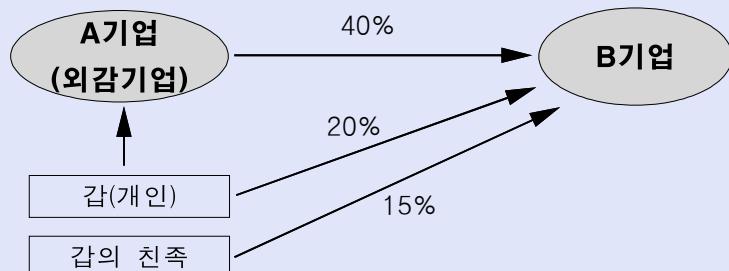
- ☞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 지분변동은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더라도 다음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용 12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2014년 3월에 분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기업과 B기업 간 규모를 합산하려고 합니다. A기업의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으로 판단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14쪽 참조)을 그대로 활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A기업의 매출액 산정은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2015년 3월 31일까지는 A기업의 2013년 말일 기준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 분할한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므로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가목 적용)

작용 13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7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75%로서,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기업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700억 원) + B기업(600억 원×40%) = 940억 원
 - B기업 : B기업(600억 원) + A기업(700억 원×40%) = 880억 원
- ④ A, B기업 모두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Tip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1

중소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요건을 갖춘 업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12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매출액 없는 경우에 주된 업종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사례13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업종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기준, 그 외의 업종은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업종이 동일한 중분류 또는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세분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26310)와 OLED 제조(26219)는 같은 중분류(C26)에 속하므로 합산하고, 소프트웨어 CD제조(기록매체 복제업, 18200), 도매업(G)과 비교해서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사례1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발생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① 가맹약정에 따라 본사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 등을 납품하는 가맹매출, ②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가맹상품매출, ③ 본사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상품매출, ④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로열티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매출과 가맹상품매출은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46800)으로 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경우 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로열티매출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별로 어떤 유형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사례15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례16

2010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14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4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2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사례17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18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A기업의 주식을 2008년 3월에 자산총액 5천억 원인 외국법인이 60% 인수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27일 이전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국내 상장법인일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05년 12월 27일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비상장기업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소유한 시점부터 즉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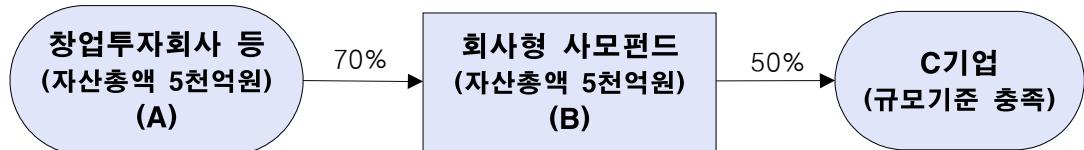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흔히 말하는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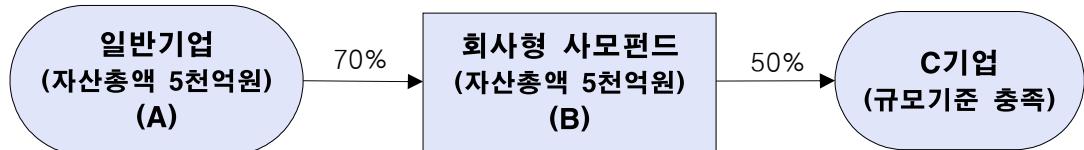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2조"(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피출자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1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사례 2 아래 그림에서 B펀드가 C기업의 최대주주이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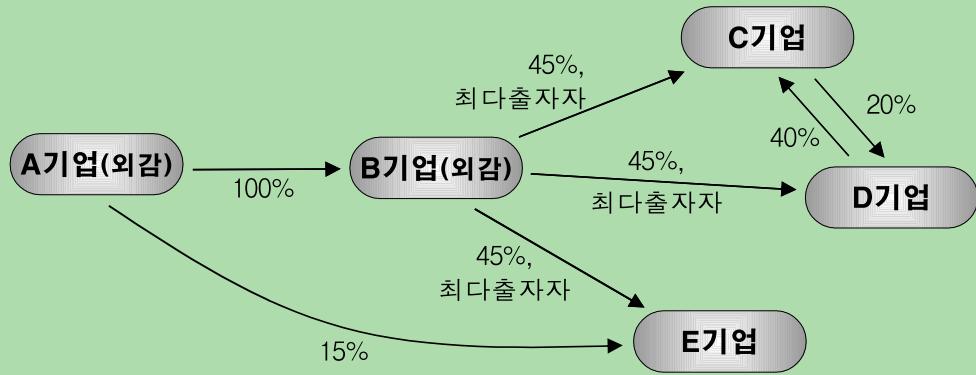
사례20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피출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와 같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중소기업 이었던 기업이 동 개정법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21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 기업별 평균매출액(억 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평균매출액	1,000	200	29	110	58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29~33쪽에서 구분한 지배·종속관계 유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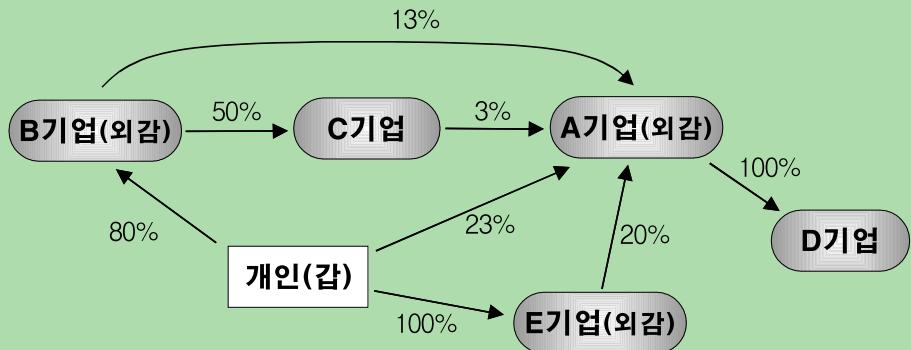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B기업	A(유형1)	C(유형1,2), D(유형1), E(유형1)
C기업	A(유형3), B(유형1,2)	-
D기업	A(유형3), B(유형1)	-
E기업	A(유형2), B(유형1)	-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 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1,000(A) + 200(B) \times 100\% + 29(C) \times (100\% \times 45\%) + 110(D) \times (100\% \times 45\%) + 58(E) \times (15\% + 100\% \times 45\%) = 1,297.35$ 억 원
- B기업 = $200(B) + 1,000(A) \times 100\% + 29(C) \times (45\% + 45\% \times 40\%) + 110(D) \times (45\% + 45\% \times 40\%) + 58(E) \times 45\% = 1,313.67$ 억 원
- C기업 = $29(C) + 1,000(A) \times (100\% \times 45\%) + 200(B) \times (45\% + 45\% \times 40\%) = 605$ 억 원
- D기업 = $110(D) + 1,000(A) \times (100\% \times 45\%) + 200(B) \times (45\% + 45\% \times 40\%) = 686$ 억 원
- E기업 = $58(E) + 1,000(A) \times (15\% + 100\% \times 45\%) + 200(B) \times 45\% = 748$ 억 원

사례22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잔여 지분은 기타 소액주주로 간주

<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평균매출액	300	200	100	80	50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29~33쪽에서 구분한 지배·종속관계 유형을 의미함)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B(유형2), E(유형1)	D(유형1)
B기업	-	A(유형2), C(유형1)
C기업	B(유형1)	-
D기업	A(유형1), E(유형3)	-
E기업	-	A(유형1), D(유형3)

* 기존 해설서에서 B기업과 D기업 간 지배·종속관계로 보던 것은 해석오류로 삭제함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300(A) + 200(B) \times (13\% + 3\%) + 50(E) \times 20\% + 80(D) \times 100\% = 422$ 억 원
- B기업 = $200(B) + 300(A) \times (13\% + 3\%) + 100(C) \times 100\% = 348$ 억 원
- C기업 = $100(C) + 200(B) \times 100\% = 300$ 억 원
- D기업 = $80(D) + 300(A) \times 100\% + 50(E) \times 20\% = 390$ 억 원
- E기업 = $50(E) + 300(A) \times 20\% + 80(D) \times 20\% = 126$ 억 원

3장.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유예기간 부여기준, 경과조치 적용기준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현재시점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3개월간은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3조의3 신설, 2012.1.1일 시행)

Tip

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사업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2. 시행령 개정(2012년도) 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체서류로서 가(假)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회계장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든 기업이 시행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라 2014년도에 판정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유효하며, 개정된 법령은 기존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전 범위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이미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12년~2014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통해 판단한 중소기업 여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기업은 9월 결산법인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일반적인 기업의 적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 고시 2012-0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
 -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로서, ①번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창업등을 한 날’부터 ‘창업등을 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
 - 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거나 모회사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며 30%이상 지분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에 “사유 발생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정한 변동일자(통상 매월 1일)를 기준으로 함
 - ④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용 사례

적용 1 2014년 7월 3일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5년도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산정일)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산정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2015.1.1. ~ 2015.3.31.)이라면, 창업일(2014.7.3.)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2015.3.31.)까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결과를 적용합니다. 이 때 중소기업 여부는 2014년 4월 14일 시행령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산정일이 2015년 4월 1일 이후라면, 일반기업처럼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된 평균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적용 2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4년 5월 30일 현재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중에 주식의 70%를 대기업인 B기업(12월 결산법인)이 인수하였다면, 언제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 개별기업의 크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된 날부터, 주식을 취득한 B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 억 원 이상이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 제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주식 인수 시점에서 지배기업인 B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3.12.12.) 현재에는 두 기업이 주식 소유 관계가 없으므로 즉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4년도 말일까지 A, B기업 간 지분관계가 유지된다면 2015년 4월 1일부터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Tip

관계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3 LE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입니다. 2014년 8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A사는 개별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므로 2014년 8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건 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날부터 중소기업에 다시 편입됩니다.

적용 4 2010년도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의 2015년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 2015년도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3, 2014년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입니다.

적용 5 12월 결산법인인 A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 초과하여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상한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럼 다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기존 법령에 따른 적용기간(2014.4.1~2015.3.31) 동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등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한다면 2015년 4월 1일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속하게 됩니다.

①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던 세제·자금·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Tip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으로 결정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라 함은 결산이 끝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이 30%이상 지분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Tip

종전에는 상한기준 초과 시, 창업 후 1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시, 관계기업으로 인한 규모기준 초과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이를 사유에 의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만 해당됩니다.

< 유예제외 사유별 개정연혁 >

유예제외사유	도입 및 개정연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95.7.1.) 유예제외 도입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	▪ ('95.7.1.) 유예제외 도입
창업한지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 ('95.7.1.) 유예제외 도입 ▪ ('15.1.1.) 유예 허용
독립성기준 미충족	▪ ('97.12.31.) 대규모집단 유예제외 추가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변경) ▪ ('02.5.20.)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30%)일 경우 유예제외(모든 독립성기준 미충족 시 유예제외) ▪ ('11.1.1.) 관계기업 제도 도입과 함께 유예제외사유 추가 ▪ ('14.1.1.)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 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 허용 ▪ ('15.1.1.) 모든 관계기업 유예 허용
상한기준 초과	▪ ('12.1.1.) 유예제외 추가 ▪ ('15.1.1.) 유예 허용

-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를 약용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1회로 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즉,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유예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이 됩니다.
- 개정 법령 시행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은 유예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과조치

- 중소기업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변동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규모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과 경과조치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행일 늦추는 방법은 개정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 일자를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여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방법이며, 경과조치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14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시행일을 7개월가량 늦춰서 2015년 1월 1일 시행함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이렇듯 경과조치가 3년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예기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사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 기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종료일을 정함)
적용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예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경과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하며, ‘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유예중인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본래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만을 의미합니다.
- 개정규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당해 법령에서 개정된 조문을 의미하는데,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표1]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경과조치 적용을 받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경과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예중인 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남은 경과조치 기간이 소멸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경과조치에 해당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과조치를 받은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됩니다.

Tip

1. 경과조치는 개정 법령의 맨 마지막 “부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경과조치는 개정규정 시행의 시급성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령 개정 시마다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법령의 경과조치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해 조회바랍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적용 사례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3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 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2015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일반 중소기업으로 편입됩니다.

적용 2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이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유예 1회 제한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만 횟수를 제한하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도 2015년 이후에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3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은 2014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2014년 3년평균 매출액은 850억원입니다. A기업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 A기업의 경우 2015년 4월 1일 이후 개정법령(음료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5302호, 2014.4.14.> 제2조제1항에 의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경과조치 기간 중 또는 만료 이후에 규모가 축소하여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23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는 개정 법령은 모든 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나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모든 기업이 시행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라 2014년도에 판정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유효하며, 개정된 법령은 기존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의 결산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 ~ 2014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을 산정한 결과를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가장 빠르게 9월 결산법인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으며, 가장 늦게는 8월 결산법인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례24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은 개정법령에 따라 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5년 1월 1일 개정법령 시행 전에 유예중인 기업도 유예제외 사유에 추가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존 유예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25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유예받은 적이 있는 기업도 해당하나요?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만 1회 제한횟수로 인정하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이거나 과거에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적이 있었던 기업도 2015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유예기간 3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6

창업일 당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창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사례2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은 합병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및 중소기업 확인방법

이 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기준과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①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구분

-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 등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이 복잡하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 종	규 모 기 준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Tip

1. 업종 구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처럼 주업종 판단에 따르며, 제조업은 대분류 기준으로만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3쪽 '업종분류 방법' 참고)
 2.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Tip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 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2]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용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합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최근 주주명부 등)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지방청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Tip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 시책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원 철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공공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과 시책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사전에 자가진단하고, 시책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는 확정적인 자료가 아닌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이러한 확인제도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범용 증빙 자료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발이 완료 되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관련사항 공지)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② 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9조

제9조(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③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별지 제3호

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를 해당 기업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적용 사례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2014년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인 경우 소기업인가요?

☞ 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이고, 소상공인 기준은 1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모두 해당됩니다.

적용 2 2013년 10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15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2014년 1월 ~ 2014년 12월)이므로 2014년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적용 3 2014년 3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15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이 지났으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2014년 3월 ~ 2014년 12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15년 5월 10일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14년 5월 11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적용 4 2014년 7월 15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15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이므로 창업·합병·분할한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눈 인원입니다.

적용 5 2015년 5월 3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15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 2015년 5월 10일 현재의 인원수입니다.

적용 6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100억이라면, 소기업인가요?

☞ 도매업의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기준이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비록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소기업도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28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자, 연구전담요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29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지휘와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30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산총액도 모두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참고 바랍니다.

사례31

A기업이 외국에 출장소(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상시 근로자로 보나요?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해 외국에 법인격이 없는 지점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국내기업의 조직(부서)입니다. 따라서 A기업이 국내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인에서 직접 고용한 자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입니다.

사례3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실무 적용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에 표시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일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급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표시된 근로자 수가 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간이세액의 인원으로 산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퇴사나 신규 채용이 발생하여 간이세액의 인원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근거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3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의 경우 2회의 결과만으로 평균인원을 산정한다면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고용보험납부영수증, 의료보험납입영수증,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 대장 등)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직전 과세 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반기에 한번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34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 2,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 6월을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단기간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유무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업무 수행이 끝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씩 연속적으로 반복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불연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례35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특별법인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타 법률에서 중소기업자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만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입니다. 만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다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항은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한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들 비영리법인·단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Tip

법인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다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참 고 자 료

-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과거 법령은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은 국내 모든 법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제 · 개정 주요내용

(법 : 법률, 영 : 시행령)

개정일	주요내용
2014. 4.14. (영)	<p><시행 201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규모기준을 3년평균매출액으로 단일화(제조업을 중분류 기준으로 변경) ▪ 상한기준을 '자산총액 5천억원'만 남기고 모두 폐지 ▪ 창업기업, (모든)관계기업, 상한기준 초과시에 대한 유예허용(유예 1회로 제한) ▪ 독립성기준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환율 적용을 5년평균치로 변경 ▪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세부기준 변경 및 협동조합도 동일기준으로 신설
2014. 1.14. (법)	<p><시행 2014.4.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명문화
2013. 10.16. (영)	<p><시행 2014.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함으로써 관계기업이 성립된 경우,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유예 허용
2011. 12.28. (영)	<p><시행 201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세부기준 마련('12.1.26. 시행) ▪ 중소기업 적용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1년간으로 변경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을 확대(200명·200억원 → 300명·300억원) ▪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500 → 1,000억원) ▪ 일부 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10 →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독립성 기준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 -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개인의 지배기업으로써 자격 배제, 관계기업의 주업종 판단기준 변경(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
2009. 11.19.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완화
2009. 3.25. (영)	<p><시행 2009.3.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분류를 대분류체계로 일원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세/세세분류별 32개 업종 → 대분류기준 18개 업종으로 일원화 ▪ 상한기준 추가('12.1.1 시행)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 독립성 기준 강화 ('11.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도 제외

개정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회사 제도 도입
2007. 9.10.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령용어 단순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2005. 12.27.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통신업, 방송업, 의약품 및 정형 외과용품 도매업 등 13개 서비스업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 독립성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도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재추가)
2002. 5.20.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알선업, 창고업, 운송서비스, 도매,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그밖의 업종의 범위 200% 확대 ▪ 상한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립성 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05.4.1.부터 적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05.3.31.까지 적용)
2000. 12.27. (영)	<p><시행 200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준 폐지 및 기준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6개 업종(특례업종 310개)을 35개 업종으로 단순화 - 상시근로자 or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를 총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도입 ▪ 상한기준 최초 도입 : 상시근로자수 1천명 ▪ 소기업기준 변경 : 건설업(30인 → 50인 이하)
1997. 12.27. (영)	<p><시행 1997.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기준 변경 및 유예제외 사유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 200인 → 300인 이하 - 병원업 : 100인 → 200인 이하 - 관광호텔업 : 100인 → 200인 이하
1995. 7.1.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독점거래법에서 정하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개정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유예제외 규정 신설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시,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시, 창업한지 1년이내 규모기준 초과시 ▪ 소기업의 범위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인 → 50인 이하 - 건설업 : 20인 → 30인 이하 - 도·소매업, 서비스업 : 5인 → 10인 이하
1992. 7.21.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 추가(98개→108개) 및 일부업종 상시근로자수 기준 상향 ▪ 자산총액 상한기준 상향 및 구분단계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최고 300억원, 5단계 → (변경) 최고 600억원, 8단계
1987. 12.31. (영)	<p><시행 198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 추가(82개→98개) 및 상시근로자수 최고 1,000인까지 확대 ▪ 자산총액 상한기준 확대 : 최고 120억원 → 300억원 ▪ 주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의 산정기준 명확화
1986. 6.2.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을 82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상한기준 확대(최고 120억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 시작
1983. 8.11. (영)	<p><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업종에 대한 규모기준 상향을 위해 특례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부품제조업 등 30개 업종에 대해 상시근로자수 최고 700인까지 확대 - 일부 업종에 대해 자산총액 상한기준을 도입(최고 80억원)
1982. 12.31.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규모기준을 단일기준(상시근로자수)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300인 이하 - 건설업 : 200인 이하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20인 이하 ▪ 소기업자의 범위기준 최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 20인 이하 -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 : 5인 이하 ▪ 유예기간 제도 최초 도입(3년)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1976. 12.31.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 300인 이하 - 건설업 : 50인 이하 (신설) - 상업 등 서비스업 : 자산 1천만원 → 5천만원(도매업 2억원) 이하
1966. 12.6. (법)	<p><중소기업기본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규모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광업, 운송업 : 200인 이하 or 자산 5천만원 이하 - 상업 등 서비스업 : 20인 이하 or 자산 1천만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4.4.15] [법률 제12240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①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 확보)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 · 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 ·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 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매출액
 - 나. 개업일 · 휴업일 · 폐업일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정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 관리시스템의 자료 ·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 · 이용하는 자료 ·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3.8.6]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1.7.25]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 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8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제8360호, 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4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2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7호, 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0호, 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4.14.>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3.25.]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본조신설 2011.12.28.]

[제목개정 2014.4.14.]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 삭제 <2014.4.14.>

제6조 삭제 <2014.4.14.>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 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

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4.14.]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본조신설 2011.12.2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12.28.>]

제7조의3 삭제 <2014.4.14.>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4.14.>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4.4.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12.28.>]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② 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4.14.>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4.4.14.>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4.14.>

제10조(확인 방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제목개정 2013.10.16.]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 관리시스템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 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4.]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4.14.]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3.25.]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09.3.25.]

제13조(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25.]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

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1.12.28.]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 실적
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12.28.]

부칙 <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68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 · 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831호, 2009.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9호, 2009.12.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652호, 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412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3527호, 2012.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799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0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

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번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 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백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300	400	50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개정된 고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o.go.kr) 법령정보 게시판에서 확인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08호

제정 2010. 3.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3호
일부개정 2010.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5호
일부개정 2011. 5.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6호
일부개정 2012.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2호
일부개정 2012. 4.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8호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

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제3장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관계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명단 게시 절차

제4조(제외기업 명단의 게시)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제외기업”이라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게시의 시기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외기업의 명단을 분기에 한 번 게시하되, 게시 이후에 제외기업 명단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게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외기업 명단의 게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당 기업의 의견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외기업 명단을 게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업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통지의 방법)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등 소유 관계도(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다만, 원천세의 반기납부자 등 매월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 임금지급대장 등 매월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각 1부
3.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해당 기업에 한함)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원본 1부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원본 1부
6.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영 제7조의4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

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③ 제1항 제2호~제7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을 통해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송달”은 “통지”로 본다.

제8조(정보의 범위) 제4조에 따라 게시되는 제외기업 명단에는 해당 기업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요령

제9조(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우대

③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를 해당 기업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및 경과조치) 종전의 「중소기업 범위 관련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2호)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의 견 서

제 출 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주소	
	담당자 성명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의견 내용		
첨부 자료 목록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既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주식등 소유 관계도

① 주식등 소유 비율

(단위 : %)

기업명 주주(출자자)	당사	A회사	B회사	...
당사				
A회사				
B회사				
특수관계자(갑)				
특수관계자(을)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3조의2에 따라 당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외국법인은 제외)
- * 특수관계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② 상시근로자수등의 현황

기업명 현황	당사	A회사	B회사	...
법인번호				
상시근로자수(명)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자산총액(백만원)				

- * 동 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현황만을 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既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화() 휴대폰()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주된 업종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既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

(뒤 쪽)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 “예”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이 때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 “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 “아니요”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 “아니요”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에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에 체크
-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에 체크
-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예”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

2015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발행일 : 2014년 10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기획·집필 : 유동준, 김종길, 최명선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8913, 3957

홈페이지 : www.smba.go.kr,

sminfo.smba.go.kr
